

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

연천소방서의 화재 안전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2024. 6. 24.

연 천 소 방 서 장



- 조사기간 : 2024. 6. 18. ~ 6. 19.
- 조사대상 : 총 2개(세부내역 별첨)
- 조사인원 : 화재 안전조사팀 1개반 (3명)
- 조사사유 :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
- 조사방법 : 종합조사, 부분조사
- 주요 조사내용
 1.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
 2. 법 제24조, 제25조,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
 3.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4.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·통보·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
 7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9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(防火區劃)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
 10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방염(防炎)에 관한 사항
 11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
 12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, 제9조, 제9조의2, 제10조,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13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5조, 제6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15.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 서장이 화재 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화재안전조사 결과 세부내역

연번	대상	위치	유지·관리 상태		비고
			소방시설	피난·방화시설	
1	연천군 자원새롬센터	연천군 청산면 초대로106번길 125	양호	양호	
2	주식회사 에이디피그린	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486	양호	양호	

※ 「화재의 예방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라서 소방관서 실정 등을 고려하여 위의 공개내용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